

# 보도자료

이 자료는 7월 4일(금) 석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4일(금) 11:30 이후부터 취급가능

## 제목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지난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

- RFI의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및 보고의무 유예기간 연장
- 대고객 외국환증개업(Aggregator) 차질 없이 도입
- 「선도 RFI」 5개 기관 선정

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년이 지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 방안 및 「선도 RFI」 선정 결과를 마련하여 발표한다.

\* (사례1) 수출입 기업이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美 성장률, 물가) 등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 가능

\* (사례2)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 증권사 등에서 정하는 임시환율(가(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 가능

### 【 운영 현황 점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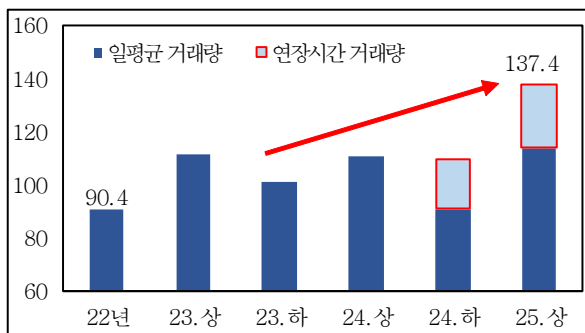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sup>1)</sup>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sup>2)</sup>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 및 결제가 쏠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연장된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거래시간 연장 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4.7월~’25.6월)은 **123.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6.3%(+17.3억불)**, **지난 5년(‘19~’23년) 평균 대비 44.6%(+37.9억불)**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금년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15:30~\*102:00) 일평균 거래량도 22.2억불**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 외환시장 거래량 추이(억불) >



< 개장시간 연장 후 외환시장 거래량 >

구분	'24.下	'25.上	전체
전체 일평균 거래량 (억불)	109.3	137.4	123.1
연장시간대 거래량 (억불)	18.5	23.5	22.2
전년 동기비 증가율	8.4%	24.0%	16.3%
지난 5년평균(‘19~’23년) 대비 증가율	35.9%	52.8%	44.6%

\* 은행간 시장 현물환 기준

## 【 추가 개선방안 】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다음과 같이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함으로써 **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첫째,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불**로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그간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 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참고1)

\*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 초기 크레딧 라인 설정의 어려움, 계열사 간 운용 효율성 등 감안

---

둘째,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금년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RFI의 보고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과 승인 절차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국내 보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피드백 과정보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 기관들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온 데 따른 조치\*이다.

\* RFI 및 대행기관에게는 6월 하순에 6개월 보고유예 연장 조치에 대한 사전 공지 완료

셋째,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증개업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시간대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5.29~7.8일)이며,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등 개정 예정

## 【 선도 RFI 선정 결과 】

한편, 외환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RFI의 지난 1년간('24.7~25.6월) 현물환 양방향 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평가하여 거래실적이 우수한 ①도이치은행 런던지점(Deutsche Bank AG, London Branch), ②하나은행 런던지점(KEB Hana Bank, London Branch), ③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Standard Chartered Bank, London Head Office), ④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Hong Kong Branch), ⑤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London Branch, 이상 ABC 순) 등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Leading RFI)로 선정하였다.

---

당초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서는 3개 기관 선정으로 고려하였으나, 선정된 기관들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 모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선정한 것이다.

외환당국은 선도 RFI로 선정된 기관들과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이를 시장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소통 창구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며,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개인 표창 등 이미 안내한 인센티브 외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들을 통해 RFI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고 연장시간 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처: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팀장 백봉현(02-759-5967), 과장 김성기(5960), 과장 오경현(574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과장 김희재(044-215-4710), 사무관 하다애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과장 정여진(044-215-4730), 사무관 이용준

E-mail: [fxmarket@bok.or.kr](mailto:fxmarke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15,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기준)** 최근 3개년간 연평균 현물환 기준 1억불 이상
  - **(산정 방식)**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 + 직거래 실적의 50%
    - \* 例) 은행간시장 0.7억불 + 직거래 0.6억불×0.5 = 총 1.0억불로 인정
  
- **(주기)** RFI 등록 적정성 평가\* 주기와 동일하게 3년마다 평가, 최근 3개년간 연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산정
  - \* RFI 지침 제2-6조에 따라, RFI는 등록일 기준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 → 외환당국이 등록 적정성 재검토
  
- **(적용 시점)** 제도 초기 안착을 고려하여 '26년 거래 실적부터 적용
  - '26년 이전 등록 기관 : '26~'28년 거래 실적을 '29년 초에 일괄 평가
  - '26년 이후 등록 기관 : 등록 3주년 도래 시점부터 평가 개시
    - \* 例) '26년 5월중 등록시 '26.6월~'29.5월 거래 실적에 대해 평가
  
- **(제재)** 최소거래량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가능
  - 1회 기준 미달 시 시정명령 부과
  - 2회 연속(3년 + 3년)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가능
  
- **(조치방안)** RFI 지침(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 참고 2

## '24.7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현황
<b>① RFI 거래 활성화</b>		
• RFI 등록요건 완화	- 외국 금융기관이 RFI 등록시 신용등급 및 크레딧라인 요건 완화	완료 (‘24.8월)
•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 증권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까지 확대	완료 (‘25.2월)
- 가이드라인 마련	- 경상거래 환전을 위한 제3자 거래시 확인 의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완료 (‘25.3월)
• 既 보고유예 사항의 보고의무 완전 폐지	- RFI의 선물환포지션 및 일중 포지션·외환 거래 현황 보고(‘24.6월 既 유예 결정) 폐지	완료 (‘24.8월)
• 선도 RFI 제도 도입	- 매년 7월 거래실적이 우수한 RFI를 선정하여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완료 (‘25.3월)
•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외환거래 cut-off 완화)	- 결제시간 연장(오전 10시 → 11시),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 대상 및 RFI 직거래 범위 확대	완료 (‘25.2월)
<b>② 국내 금융회사의 연장시간대 거래 촉진</b>		
• RFI인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물량 처리 허용	- RFI인 국내기관 해외지점이 서울 본점 장부 활용시 해당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 허용	완료 (‘24.8월)
• 선도은행 제도 개편	-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은행별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 가중치 차등화	완료 (‘25.1월)
	- 선도은행에 대한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부여시 시장조성 거래 비중을 상향	완료 (‘25.1월)
•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리그테이블)	- 매년 7월 숲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항목별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 발표	발표예정 (‘25.7월)
<b>③ 외환중개 인프라 선진화</b>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	- 실수요자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	(‘25.2.17 법률개정, 9.19 시행)
<b>④ 국채투자 인프라 개선</b>		
•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제외 모든 수탁기관의 QFI 등록 의무 면제	완료 (‘25.3월)
• 국채통합매매계좌 신설	-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 명의 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통합매매 가능	완료 (‘25.2월)
• 글로벌 판매모델 도입	- 국내은행·외은지점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완료 (‘25.1월)
- 채권 공매도 관련 규정·유권해석 정비	-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 금융기관의 장외채권 공매도(未보유 국채 先매도, 後매입) 허용	완료 (‘25.5월)